

- 공공지원 추진위원회/조합 구성지원 - 시 보조금 지원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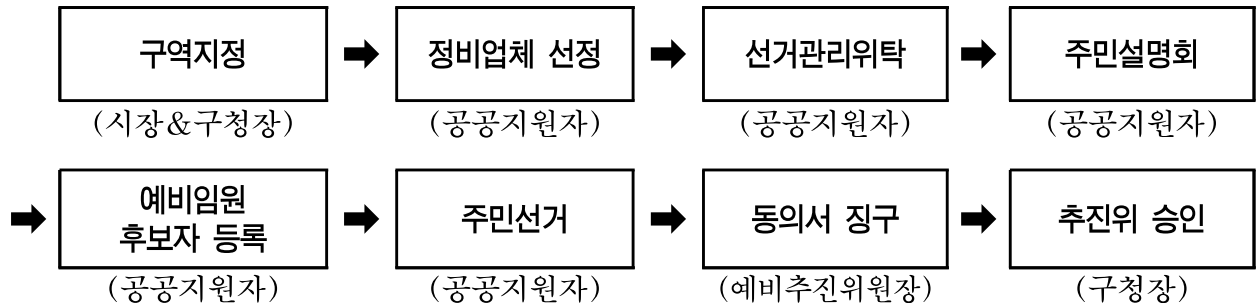
〈20. 1. 작성〉

1. 공공지원 추진내용

□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

○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
- 지원대상 :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구역
- 지원기간 : 용역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(정비업체 선정~추진위 승인)
-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절차(공공지원자 시행)



○ 공공지원자 지원사항

- 공공지원 용역 발주 및 계약

- ▶ 대상업체 :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
- ▶ 주요업무 : 토지등소유자 선거인명부 작성, 주민설명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 지원,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우편발송 등

-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등

- ▶ 대 상 : 예비추진위원장·감사 주민선거
- ▶ 선거관리 위탁시기 : 구역지정후 최초 추진위 구성 지원시
- ▶ 수탁기관 : 구 선거관리위원회
- ▶ 선거관리 주체별 업무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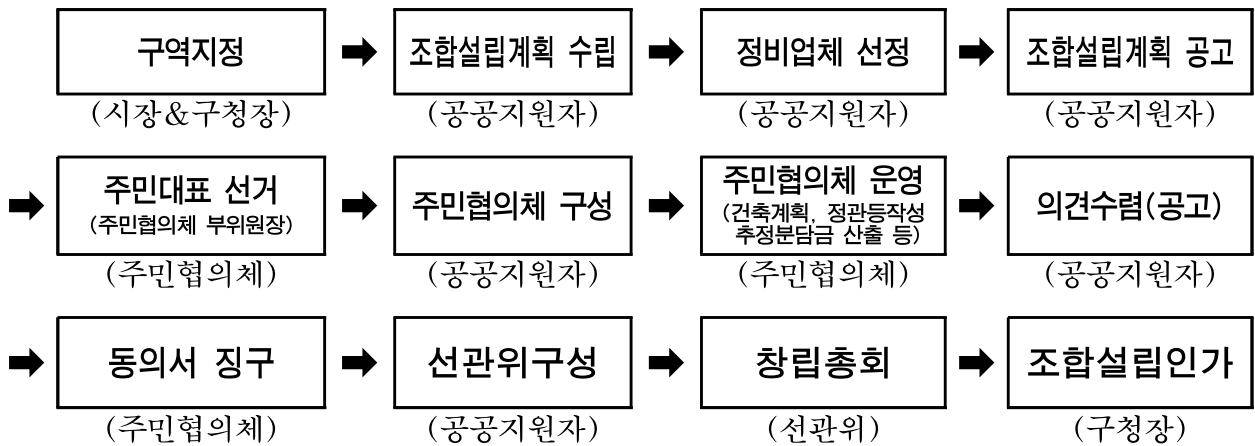
공공지원자	선거관리위원회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▷ 선거인명부 확정 ▷ 주민설명회, 합동연설회 개최 ▷ 선거홍보, 부정선거 단속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투표개표 관리 	협약으로 위탁범위 확정

- ▶ 소요비용 : 구역별 10백만원(선거위탁비 5 + 부정선거 단속비 5)
- ※ 실 소요비용에 따라 사후정산

□ 조합설립 지원(추진위 생략)

○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공공지원 조합설립 지원(추진위 생략)
- 지원대상 : 정비계획수립 기초조사 추진위생략 의견 과반수 구역
※ 서울시 보조금 교부 대상은 하단 별도 명시
- 지원기간 : 용역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(정비업체 선정~조합설립)
- 조합설립 업무 지원 절차(공공지원자 시행)



○ 조합설립 주요내용

- 공공지원자(구청장)
 - ▶ 조합설립계획 수립, 정비업체 선정, 주민협의체 구성 등
 - ▶ 주민협의체 위원 등 선임
 - 위원장 : 변호사 등 전문가로 공공지원자가 위촉
 - 부위원장 :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
 - 위 원 : 토지등소유자 1/20이상(최소 10명이상)
- 주민협의체 구성
 - ▶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(1/20 이상, 최소 10명)
 - ▶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
 - ▶ 조합정관안 작성,
 - ▶ 조합의 업무, 예산·회계, 선거관리 등 규정 작성,
 - ▶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
 - ▶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
- 창립총회(주민대표인 부위원장(창립총회 의장)이 소집)
 - ▶ 조합임원(조합장, 이사 등), 대의원 선임
 - ▶ 조합정관 확정, 예산회계규정, 선거관리규정, 행정업무규정 등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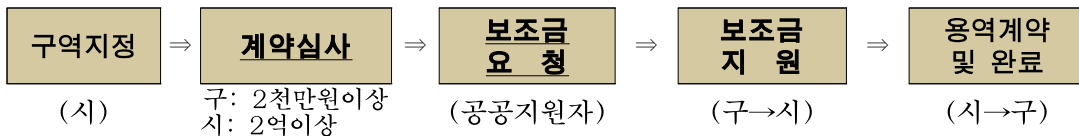
2. 시 보조금 교부기준

- 교부대상 :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구역
- 지원요건

구분	추진위원회 구성		조합 직접설립
주민의견	추진찬성 50% 이상	교부	토지등소유자 3/4이상 추진위 생략 의견 : 교부
	추진반대 25% 미만		
지원한도	토지등소유자 1,000명 미만	1.0억	3.0억
	토지등소유자 1,000명 이상	2.5억	

【공 통】

- 용역비지원 :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급(30~70%)
- 계약심사후 보조금 지원 : 전체 사업비 2억이상(시)/ 2억미만~2천만원(구)



○ 교부조건

-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
-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
- 시 보조금 집행잔액(미집행, 정산 등) 발생시 즉시 반납
- 교부조건 미이행시,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반환, 추가 교부중지 등 불이익 처분
- 집행잔액 미반납시 시보조금 지원 금지('18.1.1부터 시행)
 -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영
-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
 - 다만, “직접경비” 항목별 안전요원, 안내요원 인원수는 필요시 상호 전용가능

붙임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보조율 기준(2020년) 1부.

〈붙임〉

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 보조율 기준

〈 2020년 〉

자치구별 시비 보조율 (자치구별 재정력 기준)

기준재정 수요충족도 (재정력)	1군	2군	3군	4군	비고
	40~50%	50~70%	70~100%	100%이상	
해 당 자치구	성북구, 노원구 (2개구)	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, 중랑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관악구, 강동구 (15개구)	종로구, 중 구 용산구, 마포구 영등포, 서초구 송파구 (7개구)	강남구 (1개구)	
시비보조율	70%이내	60%이내	50%이내	30%이내	

「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」 별표2

자치구 재정력	40~50%	50~70%	70~100%	100%이상
지원비율	70%이내	60%이내	50%이내	필요시 30%이내